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2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3-2소위04-산01호
민원표시 2AA-2211-0101905 손실보전금 지급 요청
신 청 인 A
피신청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의 결 일 2023. 1. 30.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경남 (주소 생략)에서 소매업 등(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당초 이 민원 사업장이 들어설 건물(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의 준공이 2020. 0.로 예정되어 있어 사업자등록을 2020. 0. 0. 미리 하였으나, 이 민원 건물 부지가 경사진 언덕에 위치하여 난공사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준공이 늦어졌고 2021. 0. 0.이 되어서야 이 민원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인테리어

등 영업 준비 기간을 거쳐 2021. 0. 0. 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피신청인은 실제 영업일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만을 기준으로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하 '이 민원 보전금'이라 한다) 지급여부를 판단하여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부당하니 지원금을 지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보전금은 공고상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요건 등 기준이 적용되는 바, 이 민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은 2020. 0. 0.이고 이에 따라 이 민원 보전금 지급을 위한 매출감소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였을 때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 줄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고자 2022. 5. 3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를 하였고, 이 민원 보전금 지급 방법은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이 민원 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속지급'과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으로 나뉜다.

나. 이 민원 보전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 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하고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며 이 민원 보전금의 지원금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1.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내용 >

(단위 : 만 원)

구분		개별업체 매출액 규모					
		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60% ^{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 ^{이상} ~60% ^{미만}	800	700	800	700	700	600
	△40% ^{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다. 이 민원 보전금의 지원대상은 2021. 12. 15. 이전 개업하여 2021. 12. 31. 기준 영업 중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고,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라. 이 민원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에 따른 매출감소 판단 구간은 <표2>와 같고,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 민원 사업장 개업일을 2021. 6.로 인정할 경우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에 따른 매출감소 판단 구간은 <표3>와 같다.

< 표2. 개업일을 2020. 0월로 인정할 경우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매출감소 기준' >

개업일	매출액		비고
	기준기간	비교기간	
'19.12월~ '20.11월	'20년	'21년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0.상반기	'21.상반기	
	'20.하반기	'21.하반기	

< 표3. 개업일을 2021. 0월로 인정할 경우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매출감소 기준' >

개업일	매출액		비고
	기준기간	비교기간	
'21.6월~ '21.10월	'21.7~11월	'21.12월	·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매출감소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 국세청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

마.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장 건물 공사가 지연되어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에 개업이 불가능하였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하여 그 증빙으로 이 민원 건물에 대한 공사변경 계약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당초 공사계약기간은 2019. 0. 0. ~ 2020. 0. 0.이고 변경된 공사계약 기간은 2019. 0. 0. ~ 2021. 0. 0.이다.

바.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장의 실제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인 2020. 0.이 아니며 2021. 0.부터 실제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이 민원 건물의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갑)과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국세청 과세인프라 매출내역을 확인한 바, 이 민원 건물은 2021. 0. 0. 사용승인 및 2021. 0. 0.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이 민원

사업장의 2020년 하반기 매출은 없으며 카드매출이 최초 발생한 때는 2021. 0. 이다. 이 민원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일반건축물대장(갑),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 및 국세청 과세인프라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 표4. 이 민원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갑구' 기재사항 >

(표 생략)

<표5. 이 민원 건물 일반건축물대장(갑) 기재사항>

(표 생략)

<표6. 이 민원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표 생략)

<표7. 국세청장이 제출한 이 민원 사업장 과세인프라 매출내역>

(표 생략)

사. 신청인은 최초 영업일을 증빙하는 자료로 2021. 0. 0.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한 임시 영업개시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표8. 신청인 인스타그램에 올린 이 민원 사업장 임시 영업개시 공지사항 >

(표 생략)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1] 및 [별지2]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이 민원 보전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 피신청인으로서는 다수의 소상공인들에게 이 민원 보전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원칙 또는 기준을 정하여 공고 및 시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나, 원칙 또는 기준이 적용될 수 없는 상황에까지도 과도하게 원칙 또는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이 민원 보전금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해 보이지 않는 점, ②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이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민원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인 2020. 0.은 이 민원 건물이 준공되기 전으로 이 시기는 신청인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④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한 국세청 과세인프라 매출내역과 일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신청인이 소셜미디어에 작성한 공지사항 등을 볼 때 신청인이 2021. 0.부터 실제 영업을 하였다는 주장이 거짓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민원 사업장의 실제 영업 시작일인 2021. 0.을 이 민원 사업장 개업일로 볼 경우 2021. 7.~2021. 11. 과세인프라 월평균 매출은 00,000,000 원이고 2021. 12. 과세인프라 매출은 00,000,000원이므로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상의 지급요건인 매출감소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제 영업일을 기준으로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한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보전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1]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⑫ 생략

[별지2] 이 민원 보전금 공고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

2.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① 공통지원요건

- 국제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불입1, 불입2, 불입3)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 ① (업종 매출감소율) 국제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불입5)
-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 * '20. 8. 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 10. 1. 이후 조치부터 적용

【대상 시설 예시】

방역조치	대상 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 식당·카페, 노래(포인)연습장, 목욕장 • 유흥주점·유흥주점 : 노래방, 공연장, 카지노, PC방, 파티룸 • 다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일일사업체 • 직장내체육시설 : 오락실·유흥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박물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PC방, 경륜·경마·경마장 • 파티룸 : 다사지업소·안마소, (불나)스포츠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직영판매점·보통점 • 오락실·유흥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박물관,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미용시설 : 경륜식장, 강제식장, 동양전통문물 •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숙박시설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박람회장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시설구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③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불입3)

□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불입5)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 적용 (→ 불입4)
- * 국제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를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 * 예) 매출감소 기준별 매출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감소율을 적용

기준기간	비교기간	매출감소율	적용
'19년	'20년	70%	○
'19년	'21년	45%	

②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단위 : 만원)

구분	연매출액* 4억원 이상		연매출액* 2~4억원		연매출액*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 매출 감소율	△60% 미만	1,000	800	800	700	600
	△40% 미만~60% 미만	800	700	800	700	600
	△40% 미만	700	600	700	600	600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 불입3)

2.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다수사업체 지원 방식】

* 지원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 b, c, d라 할 때, 지원금 = a + 0.5b + 0.3c + 0.2d

[예시1] (사업체 2개) 지원금액이 1,0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1,000 × 100%) + (600 × 50%) = 1,300만원

[예시2] (사업체 3개) 지원금액이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800 × 100%) + (700 × 50%) + (600 × 30%) = 1,330만원

[예시3] (사업체 4개) 지원금액이 1,000만원,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1,000 × 100%) + (800 × 50%) + (700 × 30%) + (600 × 20%) = 1,730만원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3. 지원제외

- 사형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 제외 업종 (→ 불입6)
- *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비공영계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3. 지원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시 기	대 상	지급 시기
신속 지급	- 기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5.30.(월)~
확인 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6.13.(월)~
이의 신청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8월 중

1) 신속지급

- 대상 : 기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문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온라인 신청 절차】

대상 여부 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 확인·입력	지급
- 정보제공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 - 본인은 본인공통(주민등록번호) 인증서명 가능	- 업종명 - 사업장 주소 - 계좌번호	-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 현금 입금

2) 확인지급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3) 이의신청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4.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당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sosangonginseonilbojeon.kr)

붙임 1 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열위 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준	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소재처리 및 포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프레스, 연박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약품 분할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랙터 등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80억원 이하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인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연료 및 기화제 제조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류, 정발, 유행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숙박 및 음식점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繕)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붙임 2 중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에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보피제품 제조업	C14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전자제품 제조업	C24	
5. 전기전자 제조업	C28	
6. 기타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8. 광업	B	
9. 석유제품 제조업	C10	
10. 납품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1,000억원 이하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13. 프레스, 플라스틱 및 적유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제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도구 제조업은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8	
19. 자동차 및 트랙터 등 운송장비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급장치 공급업	D	800억원 이하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식료 제조업	C11	
26. 여식 및 기복기계 제조업	C18	
27. 의약품, 화장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류, 섬유,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600억원 이하
32. 운수 및 정보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숙박(旅館)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41. 관광 및 호텔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붙임 4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개업일	매출액		비고
	기준기간	비교기간	
'19. 11월 이전	'19년	'20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1년	
	'19. 상반기	'20. 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21. 상반기	
	'19. 하반기	'20. 하반기	· (간이연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 비교
		'21. 하반기	
	'20년	'21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1. 상반기	
	'20. 상반기	'21. 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21. 하반기	
	'20. 하반기	'21. 하반기	· (간이연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 비교
		'21. 상반기	
'19. 12월~'20. 11월	'20년	'21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1. 상반기	
	'20. 상반기	'21. 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21. 하반기	
'20. 12월~'21. 5월	'21. 상반기	'21. 하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21. 상반기	
	'21. 7~11월	'21. 12월	·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 비교
		'21. 12월	
'21. 11월~'21. 12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하되,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사업체가 속한 업종은 해당 사업체의 주업종 기준으로 한다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연도별 또는 반기별(일반과제자) 매출 비교시 신고매출액을 연환산하여 비교
- 신고매출액 환산 시 사업 역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frac{12}{3}$)
- 간이과세자연세사업자의 반기별 매출 비교, '21. 6월 이후 합업자의 '21. 7~11월 대비 '21. 12월 매출 비교시 해당기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적용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 비교기간이 되는 '20~'21년의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자료 모두 부재시 확인지급 등을 통한 영업 여부 확인 후 지급(영업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붙임 3 지원대상 판단기준

□ 매출규모 판단기준

○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규모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

개업시기	매출규모 판단기준	비고
'18년 이전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 (0원 포함) 지원제외
'19년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① ,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20년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② ,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11월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③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2월 및 '22년 1월 과세인프라 ^④ 모두 부재시 지원제외
'21년 12월	소기업 규모로 추정	

- ①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사업 역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frac{12}{3}$)
 ②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상향지원 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판단 기준

· 아래 조건(①, ②)을 모두 만족할 경우 상향지원

①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에 대해 소기업에 초과

②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

개업시기	매출규모 판단기준	비고
'18년 이전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 (0원 포함) 지원제외
'19년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① ,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20년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② ,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10월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③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2월 및 '22년 1월 과세인프라 ^④ 모두 부재시 지원제외
'21년 11월	소기업 규모로 추정	

- ①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사업 역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frac{12}{3}$)
 ②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단,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기업(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상향지원(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제출 필요)

붙임 5 상향지원 업종(업종별 매출 40%이상 감소) 현황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세세분류 기준

대분류	세세분류	대분류	세세분류
음식,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도매 및 소매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무도장 운영업		그 외 기타 무장품 소매업
	노래 연습장 운영업		연세점
	수영장 운영업		여행사업
	전차 게임장 운영업		서적 임대업
	자전거점 운영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불행점 운영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점점점 게임방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보육시설 운영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정보통신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일반 유흥 주점업
	공연시설 운영업		기타 주점업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생각주 전문점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휴양 콘도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운수 및 창고업	공방 운영업
	기원 운영업		항안 내 여객 운송업
	연극단체		항공 여객 운송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표면처리 및 척측 작업 제조업
	사격장 관리 운영업	제조업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교육 서비스업	공연 기획업		방한 캠프용 안전기 제조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영화관 운영업		육성업
	철수선 수선시설 운영업		마사지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예식장업

붙임 6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임대 중개업
46107 중	예술물, 공예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임대매 도매업
46333	임대매 도매업 * 임대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유류제품 도매업 * 단, 연소유류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음료주점업
56212	무주류음료주점업
58122 중	경매, 경품, 경품 관련 장치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미탈 중개업
64	관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주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주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주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9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률,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률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알짚 및 조사 서비스업 (예: 알짚업, 호신수 등)

표준산업분류	업종
75993	신용조사 및 주실대형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과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볼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나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청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청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텔, 대화텔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추벤처기업보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피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1월 30일